

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(제3조관련)

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: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,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
 - 가. 옥내소화전설비·옥외소화전설비·스프링클러설비·연결살수설비·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
 - 나. 포소화설비의 공사
 - 다. 이산화탄소소화설비·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·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
 - 라.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
 - 마.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. 다만, 비상전원·동력회로·제어회로·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.
2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: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,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
 - 가. 자동화재탐지설비·시각경보기·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
 - 나.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
 - 다.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
 - 라.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·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
 - 마.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제1호 마목 단서의 전기시설
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.
4.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(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)을 초과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5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가.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
 - 나.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
 - 다.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시하는 경우
 - 라.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

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